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2월 13일
행정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1월 23일, 고영찬 의원
- 나. 회부일자 : 2025년 1월 23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5년 2월 13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의거하여 협의한 결과, 지원대상 기준 변경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대상자 기준 중 일부를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 기준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자”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변경(안 제4조제1항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박병규

나.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대상자 기준을 당초 기준중위소득¹⁾ 120% 이하에서 100%로 변경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지원 신청 일 기준으로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생 략) 2. 기준중위소득 <u>120%</u> 이하에 해당하는 자 ② (생 략)	제4조(지원대상)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 <u>100%</u> ----- --- ② (현행과 같음)

-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4. 7.18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되어, 그 간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최종 지원대상자 기준이 결정되어[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5406(2024.10.28)], 금번 개정안에 지원대상자 소득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¹⁾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5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392,013원임.

- 금번 개정 조례안은 여러가지 번거로운 절차가 있었음에도 보건복지부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새로운 청년 정책을 발굴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 본 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